

의안번호	2208767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9.
추계번호	25G139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·어업 분야 지방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·어업분야의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6년 812.2억원, 2031년 411.4억원 등 2026~2031년까지 6년간 총 5,979.7억원(연평균 996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,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~2031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: 5년간 -5.8억원(연평균 -1.2억원)
 -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연장: 5년간 -1.9억원(연평균 -0.4억원)
 -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: 5년간 -57.3억원(연평균 -11.5억원)
 -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5년간 -116.1억원(연평균 -23.2억원)
 -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연장: 5년간 -2.0억원(연평균 -0.4억원)
 -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1,042.0억원(연평균 -208.4)
 -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1,235.3억원(연평균 -247.1억원)
 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46.1억원(연평균 -9.2억원)
 -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1,541.6억원(연평균 -308.3억원)
 -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: 5년간 -1,520.2억원(연평균 -380.1억원)
 - － 개정안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제167조)는 2026~2030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~2031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지방세, 2026~2031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의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1항)	-1.2	-1.2	-1.2	-1.2	-1.2		-5.8	-1.2
교환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2항)	-0.4	-0.4	-0.4	-0.4	-0.4		-1.9	-0.4
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환분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3항)	-11.5	-11.5	-11.5	-11.5	-11.5		-57.3	-11.5
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21.9	-20.9		-116.1	-23.2
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0.4	-0.4		-2.0	-0.4
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.4	-208.4	-208.4	-208.4	-208.4		-1,042.0	-208.4
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3조제2항)	-247.1	-247.1	-247.1	-247.1	-247.1		-1,235.3	-247.1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5조제1항)	-9.2	-9.2	-9.2	-9.2	-9.2		-46.1	-9.2
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5조제2항)	-308.3	-308.3	-308.3	-308.3	-308.3		-1,541.6	-308.3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		-362.0	-373.8	-385.9	-398.5	-411.4	-1,520.2	-380.1
합 계	-812.2	-1,172.8	-1,183.3	-1,194.2	-1,205.8	-411.4	-5,979.7	-996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1항 (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)	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발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2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)	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3	안 제8조제3항 (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)	-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·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4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)	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5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 에 대한 지방세 면제)	- 어업권·양식업권 출원 취득의 취득세 및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6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- 농어업인(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포함) 용자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7	안 제13조제2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 한 감면)	-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8	안 제15조 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9	안 제15조 제2항 (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 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	-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10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30. 12. 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조제1항 (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2	안 제8조제2항 (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3	안 제8조제3항 (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)	○	
4	안 제9조제2항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감면)	○	
5	안 제9조제3항 (출원 취득 및 등록에 의한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감면)	○	
6	안 제10조제1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)	○	
7	안 제13조제2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8	안 제15조제1항 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)	○	
9	안 제15조제2항 (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	○	
10	안 제167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 중 통과되어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 - 단, 개정안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제167조)는 2026~2030년 법인지방소득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 기준으로 2027~2031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
- (안 제8조제1항)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19년 2.2억원에서 2020년 1.1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1억원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2020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.2억원
- (안 제8조제2항)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0.4억원
- (안 제8조제3항)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1.5억원
- (안 제9조제2항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 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원

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원
- (안 제9조제3항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 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- (안 제10조 제1항)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1년 260억원에서 2022년 163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13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9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- (안 제13조 제2항)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며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31.5억원
 - (재산세) 각 호별로 재산세 감면을 변화로 감면율이 동일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15.6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- (안 제15조 제1항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다고 가정하고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

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(취득세) 향후 5년(2026~2030년)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고 가정¹⁾
- (재산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2023년 기준 재산세 감면액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
□ (안 제15조 제2항)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최근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(취득세)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(2019~2022년)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(2019~2022년)간 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3년의 경우 2023.12.28.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준비과정에서 신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감면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컸으며, 이는 특이소요로 간주하여 추계에서 제외
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□ (안 제178조)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1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향후 5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음을 확인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안 제8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
○ 다만,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

□ (추계방법) 2019년 2.2억원에서 2020년 1.1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1억원 초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2020~2023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.2억원

[표 2]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.2	1.1	1.0	1.3	1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1.2억원, 2030년 1.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.8억원(연평균 1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등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의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조제1항)	-1.2	-1.2	-1.2	-1.2	-1.2	-5.8	-1.2

나.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(안 제8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「농어촌정비법」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교환·분합하는 농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 - 다만,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·분합하는 경우에는 제외
- (추계방법) 2019년 0.3억원에서 2023년 0.1억원으로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0.4억원

[표 4]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0.3	0.3	0.7	0.5	0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0.4억원, 2030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.9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환·분합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8조제2항)	-0.4	-0.4	-0.4	-0.4	-0.4	-1.9	-0.4

다. 교환·분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8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하는 경우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교환·분합하는 임야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
 - 단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교환·분합하는 임야의 경우 99만제곱미터 초과 시 50% 감면
- (추계방법) 2019년 9.0억원에서 2021년 14.3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10.6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평균 감면실적: 11.5억원

[표 6] 교환·분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9.0	11.9	14.3	11.5	10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임업을 영위하기 위해 교환·분합한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취득세는 2026년 11.5억원, 2030년 11.5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57.3억원(연평균 11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암업을 영위하기 위한 교환분합 입야에 대 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(안 제8조 제3항)	-11.5	-11.5	-11.5	-11.5	-11.5	-57.3	-11.5

라.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등 감면(안 제9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·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
- (추계방법) 자영어민이 취득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30.8억 원에서 2023년 21.7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3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2019~2023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매년 감면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증감률: -8.4%
 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8.0억 원
 - (지역자원시설세) 최근 5년간 소형어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: 1.1억 원

[표 8]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30.8	29.5	27.0	27.4	21.7
재산세	7.1	8.4	8.3	7.9	8.2
지역자원시설세	1.0	1.2	1.2	1.1	1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영어민이 취득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5.8억원, 2030년 20.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6.1억원(연평균 23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2항)	-25.8	-24.4	-23.1	-21.9	-20.9	-116.1	-23.2
- 취득세	-16.7	-15.3	-14.0	-12.8	-11.8	-70.6	-14.1
- 재산세	-8.0	-8.0	-8.0	-8.0	-8.0	-40.0	-8.0
- 지역자원시설세	-1.1	-1.1	-1.1	-1.1	-1.1	-5.5	-1.1

마. 어업권·양식업권 등 출원취득의 취득세 등 면제(안 제9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개요) 출원에 의해 취득한 어업권·양식업권의 취득세와 어업권·양식업권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
- (추계방법)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
- (취득세) 2019, 2020년은 감면실적이 없으며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3억원
- (등록면허세) 최근 5년간 감면액이 0.1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,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면허세 감면액: 0.1억원

[표 10]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취득세	0	0	0.2	0.6	0.2
등록면허세	0.1	0.1	0.1	0.1	0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0.4억원, 2030년 0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원(연평균 0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지방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9조제3항)	-0.4	-0.4	-0.4	-0.4	-0.4	-2.0	-0.4
- 취득세	-0.3	-0.3	-0.3	-0.3	-0.3	-1.5	-0.3
- 등록면허세	-0.1	-0.1	-0.1	-0.1	-0.1	-0.5	-0.1

바.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(안 제1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의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기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 포함)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50% 감면

□ (추계방법) 2019년 236.3억원에서 2021년 260.3억원까지 증가, 이후 2023년 130.2억원까지 감소하여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08.4억원

[표 12] 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36.3	252.4	260.3	162.9	130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시 용자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등록면허세는 2026년 208.4억원, 2030년 208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042.0억원(연평균 208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등록면허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용자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조제1항)	-208.4	-208.4	-208.4	-208.4	-208.4	-1,042.0	-208.4

사.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3조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개요)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
- 사업 종류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 25~50%, 재산세 감면율 50~75% 적용

[표 14] 현행 사업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

	감면율	
	취득세	재산세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8조·제20조, 「농지법」 제11조·제15조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	50%	— (~2022.12.31.) 50%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	50%	75% (~2021.12.31.) 100% (~2022.12.31.) 50%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	50%	— (~2022.12.31.) 50%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·임대하는 부동산	50% 환매취득 시 100%	50%
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지	50%	—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	25%	—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	25% (~2022.12.31.) 50%	—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	50%	—

주: ()는 2020년 이후 감면율 변화

자료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3조제2항

□ (추계방법)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며, 재산세 감면실적은 2023년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취득세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연평균 감면실적: 231.5억원
- 재산세 2023년 감면실적 유지: 15.6억원
 - 각 호별로 재산세 감면을 변화가 있어 2023년 동일한 감면을 수준의 감면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15]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12.6	256.1	272.0	288.0	257.2
- 취득세	184.7	228.2	241.5	261.5	241.6
- 재산세	27.9	27.9	30.5	26.5	15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247.1억원, 2030년 247.1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35.3억원(연평균 247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 농업관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3조제2항)	247.1	247.1	247.1	247.1	247.1	1,235.3	247.1
- 취득세	231.5	231.5	231.5	231.5	231.5	1,157.5	231.5
- 재산세	15.6	15.6	15.6	15.6	15.6	77.8	15.6

아.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(안 제15조 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율: 취득세 50%, 재산세 50% 감면
- (추계방법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어업 관련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며, 최근 취득세 감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 - (재산세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업무용 부동산 추가 취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 변동소요도 크지 않으므로, 2023년 감면실적(9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17]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19~2023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2.0	10.4	10.8	9.7	9.2
－ 취득세	15.3 ¹⁾	1.5	1.6	0.1	0
－ 재산세	6.7	8.8	9.2	9.7	9.2

주: 1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정부비축기지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감면실적으로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해당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자주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재산세는 2026년 9.2억원, 2030년 9.2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6.0억원(연평균 9.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향후 5년간 업무용 부동산 취득계획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계

[표 1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(안 제15조제1항)	-9.2	-9.2	-9.2	-9.2	-9.2	-46.0	-9.2

자.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(안 제15조 제2항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감면액: 취득세 및 재산세 100%(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그 율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
 - 지방농수산물공사: 서울시농수산물공사, 구리농수산물공사,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
- (추계방법)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 - (취득세) 2023년을 제외하고 최근 4년(2019~2022년)간 지방농수산물공사

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4년(2019~2022년)간 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간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: 0.9억원
- 2023년의 경우 2024.1.5. 출범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준비과정에서 신규 업무용 부동산 취득 소요가 발생하여 취득세 감면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컸으며, 이는 특이소요로 간주하여 추계에서 제외

- (재산세) 최근 5년간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, 최근 5년간 평균 재산세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산세 감면액: 307.5억원

[표 19]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추이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301.0	307.2	309.1	324.2	478.5
- 취득세	3.1	0.2	0.1	0.1	179.2
- 재산세	297.9	307.0	309.0	324.1	299.3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세는 2026년 308.3억원, 2030년 308.3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541.5억원(연평균 308.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지방농수산물공사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적용 기한 연장 (안 제15조제2항)	-308.3	-308.3	-308.3	-308.3	-308.3	-1,541.5	-308.3
- 취득세	-0.9	-0.9	-0.9	-0.9	-0.9	-4.4	-0.9
- 재산세	-307.5	-307.5	-307.5	-307.5	-307.5	-1,537.5	-307.5

차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(안 제167조)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□ (제도 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특례
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 0.9~1.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1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비교

구 분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, 손금불산입 - 손금산입, 익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-비과세소득-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1)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0.9%	0.9%
	2~20억원	1.9%	
	20~200억원	2.1%	1.2%
	200~3,000억원	2.4%	
	3,000억원 초과	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- (특례실적)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2020년 327.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11.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28.9억원 수준
-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에 10%를 적용하여 산정
 - 2024년 특례실적 감소는 법인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22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감면실적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-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23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-	605.3	-	1,116.7	-511.3
2억원 이하	1,181	618	0.9	5.6	1.0	6.2	-0.6
2~20억원	2,273	19,307		174.0	2.0	340.7	-166.6
20~200억원	753	37,307	1.2	403.2		731.1	-327.9
200~3,000억원	8	1,913		22.5	2.2	38.7	-16.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 인
하에 따른 특례실적을 조정
 - －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
전후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- [표 24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—	—	—	1,116.7	—	—	1,057.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.0	0.01	6.2	0.9	0.004	5.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.0	0.2	340.7	1.9	0.2	321.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.1	731.1		1.0	693.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.2	5.5	38.7	2.1	5.2	36.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－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25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605.3	1,116.7	-511.3	1,057.7	-452.4	-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－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
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26]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27.1	334.7	423.0	511.3	328.9	-
	조정 후 (A×[1-11.5%])	289.4	296.1	374.3	452.4	328.9 ¹⁾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지방소득세는 2027년 362.0억원, 2031년 411.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,520.2억원(연평균 380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1년, 법인지방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7조)	-362.0	-373.8	-385.9	-398.5	-411.4	1,520.2	-380.1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